

제정일	2008.11.01
개정일	2025.02.24.
주관부서	구매팀/법무팀
전결권자	부문장

협력업체 선정·운용 세칙

한화엔진 주식회사

목 차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3조 (협력회사 선정 기준).....	3
제4조 (협력회사 선정 및 결과 공개).....	4
제5조 (공정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4
제6조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	4
제7조 (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5

공정 00-03-00 협력업체 선정·운용 세칙

제정 2008-11-01

제5차 개정 2025-02-21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화엔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하도급 분야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협력회사'라 함은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하도급 분야 수탁사업자도 포함하며, 등록회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②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 ③ '협력회사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회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협력회사 선정 기준)

- ① 회사는 수주공사 또는 AS 부품 거래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최소 등록 기준
 - 가. 신용인증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나. 평가기준에 의한 실사평가 결과 60/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 가. 수주공사 거래회사: 경영 관리 (8점), 제조 관리 (30점), 기술 능력 (15점), 품질 관리 (30점), CSR 수준 (7점), 재무 상태 (10점)
 - 나. AS 부품 거래회사: 재무 상태 (30점), 제조 관리 (30점), 기술 능력 (30점), 임의 평가 (10점)
- ② 회사는 사내 외주업체 및 기타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최소 등록 기준
 - 가. 신용인증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평가 결과 60/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라. 사내 외주업체: 생산(조립) 역량 (60점), 구매 신뢰성 (40점)

마. 기타: 재무 상태 (30점), 제조 관리 (30점), 기술 능력 (30점), 임의 평가 (10점)

- ③ 회사는 그밖의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본 조의 규정을 참고로 하되 업체 및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 (협력회사 선정 및 결과 공개)

- ①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COVAN 또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 ②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회사와 신규 등록회사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필요 시 수시로 신규 업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협력회사에 대한 등록 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신규 협력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협력회사를 선정·등록하려는 부서(본 조에서 “유관부서”라 한다)는 업체 추천 및 거래 희망업체로부터 등록 서류를 접수 받아 협력회사 선정 절차를 수행한다.
 2. 협력회사 등록 신청 및 접수는 회사가 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3. 유관부서는 신규업체 등록을 위해 실사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할 수 있다.
 4. 유관부서는 심사 평가 결과를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본 규정에 따라 등록된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 관리·운용한다

제5조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며, 동종 업체와의 차별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제6조 (협력회사 등록 취소 기준)

- ①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아래 각 호와 같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②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당한 기준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의 귀책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한다.

제7조 (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취업 규칙, 인사 관리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